

## 향후 건강보험 급여정책 방향

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

### 임 증 규

#### 건강보험 재정상황

- 2002년 말 기준 2조 5716억원 누적차지(별표 참조)
- 재정적자의 원인
  -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진율 증가
  - 급여범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
    - '95-'99년 연평균 지출 18.5%, 수입 14.4% 증가
- 2003년까지 당기수지 균형을 도모하고 2006년까지 누적적자 원천 해소 계획

#### 연도별 재정추이

단위 : 억원

	'97	'98	'99	'00	'01	'02
수입	72,967	78,491	86,923	95,294	116,423	138,903
지출	76,787	87,092	95,614	105,384	140,511	146,510
당기 수지	-3,820	-8,649	-8,691	-10,090	-24,088	-7,607
누적 수지	37,851	30,359	22,425	9,189	-18,109	-25,716

#### 건강보험 통합

-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(2월) 구성, 운영
-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 등 통합조직으로 개편 완료(5월)
- 당청,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재정통합 여론 조성
- 예정대로 7월 1일에 건강보험 재정 통합 완료

####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설치, 운영(6월)

- 미래지향적 건강보험 발전방안 마련
-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및 보장성 확대
-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
- 공단조직을 건강증진,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, 노인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제로 탈바꿈

#### 재정 안정화 노력 강화

- 수가와 약가 등 보험진료비 절감노력으로 5월까지 급여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3.6%에 그침
  - 의원진찰료 인하, 입원료 인상 및 의료수가 3% 인상
  - 의원 진료비 고가도지표 분석, 관리
  - 약가재평가, 치료재료 조사 등으로 약품비 절감
- 앞으로 금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재정상황 수시 점검
  - 국고는 최대한 앞당겨 지원하여 금융차입비용 최소화
  - 진료비, 약품비 등 지출분야의 거품 줄이는 노력 강화

####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 제고

- 고소득층의 보험료 상한선 인상
- 재정통합과 함께 보험자의 서비스 기능을 국민편의 위주로 혁신
- 국민, 의약계, 정부 등 건강보험주체간 불신 해소 노력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비를 이용하는 관행 정착 추진

###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

- 환자 본인부담 상한금제도 도입
-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률 경감방안
  -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검토 병행
  - 암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

### 2002년도 급여비 지출분석

단위 : 십억원

	계	대학병원	종합병원	병원	의원	약국	기타
총진료비	19,060	2,648	2,379	1,181	5,963	5,056	1,833
구성비 (%)	100.0	13.9	12.5	6.2	31.3	26.5	9.6

### 요양급여비용 지불체계의 다양화

-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
  - 의사, 병원수가 분리
  - 치료재료비용 별도산정 검토
  - 의료사고 위험도 반영
-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
- 노인장기요양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
- 호스피스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
- 공공병원에 대한 총액예산제도 시범사업

###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

- 의료기관 중별 적정 수가 재평가 필요
- 전문의 인력수급 관련 왜곡현상 발생
-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이 분리되지 않음
-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분리 요구
- 의료사고 위험도 미반영으로 일부 항목에 대한 요양기관의 진료기피현상 발생

### 상대가치제도 문제점 보완

- 매 5년마다 전면적 재평가
  - 4,000여개 항목에 대한 원가조사를 통한 재평가 작업 시행
  -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표시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
- 매년 부분적 개정
  - 연구 상대가치점수와 고시 상대가치점수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부분적 개정작업 추진

### 의료계의 협조요청

-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임
  - 각 전문학회별로 해당 행위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측정에 대한 주체적 역할 기대
-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 논의
  - 각 전문학회 간 이해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합의 도출
- 상대가치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
  -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제도의 발전을 도모